

## 國家技術士法 制定에 관한 建議

1989. 9.

社團法人 韓國技術士會

### 目 次

- |                  |                   |
|------------------|-------------------|
| 1. 背景 및 沿革       | 6. 附錄(參考資料)       |
| 2. 現行 技術士制度의 問題點 | 6-1 外國技術士制度 및 法事例 |
| 3. 外國의 技術士制度     | 6-2 立法案 條文別 立法趣旨  |
| 4. 結論 및 建議       | 6-3 參考法規 및 資料目錄   |
| 5. 國家技術士法(立法草案)  |                   |

### 1. 背景 및 沿革

1) 技術士制度는 國家經濟開發 5 個年計劃事業의 一環으로서 經濟企劃院 提案으로 1963 年 11 月 11 日 法律 第1442號로 技術士法이 制定公布됨으로써 始作되었습니다.

2) “技術士”라 함은 “科學技術에 關한 高度의 專門知識과 實務經驗에 立脚한 應用能力이 있는 資格者”라 했고, 科學技術部門으로서는 農業, 水產, 林業, 電氣, 機械, 化工, 纖維, 金屬, 鑛業 船舶, 航空機, 建設, 應用理學等 13 個 部門으로 되어있었습니다.

3) 이 當時 技術士들은 技術士法에 依하여 國家經濟事業等 重要한 事業에 活用되는 한편 外資導入事業의 技術檢討等 主要事業에 關與하였습니다.

4) 그러나 이 法은 業務條項이 至極히 微弱하였으며 諸般社會事情으로 技術士活用の 度도 낮은 狀態에서 科學技術處가 新設됨에 따라 1967 年 4 月에 科學技術處로 移管되었습니다.

5) 그 後 技術士制度가 定着되기도 전에 1973 年 2 月 5 日에는 技術用役育成法(法律第2474號)

이, 또 同年 12 月 31 日에는 國家技術資格法(法律第2672號)이 制定되어 技術士의 業務 및 資格事項을 各各 分散 吸收하여 마침내 1976 年 12 月 31 日에는 技術士法廢止法律(法律第2994號)에 依하여 技術士法은 完全 廢止되고 말았습니다.

6) 또한 勞動廳의 部昇格과 함께 1981 年 12 月 31 日 國家技術資格法 自體가 勞動部로 移管(法律第3510號)되어 現在까지 21 個 技術分野 104 個 資格種目에서 5486 名의 技術士가 輩出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變化가 科學技術의 發展過程에서 일어나는 體系的인 變化라기 보다는 그때 그때 適宜添加되는 式으로 變해왔으며 技術士의 業務事項도 그 規範을 잡지 못하고 管理도 그 規律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狀況에서 우리 技術士는 內部的으로는 相互間의 葛藤과 軋轢만이 날로 甚化되어가고 對外的으로는 技術士가 根據하여 立地가 점점 弱화되어가는 現實이며 우리 技術士들이 甚히 憂慮하고 안타까와 하는것이 바로 이러한 現狀입니다.

이때를 당하여 우리 技術士가 現下 가장 緊迫

한 急先務로 하는것이 技術士法の 復活制定이며 이 法은 舊技術士法の 未備點까지도 完全히 補完한 法이 되어야 하며 이에 全體 技術士의 衆智를 모아 “國家技術士法” 制定을 建議하는 바입니다.

## 2. 現行 技術士制度의 問題點

現行 우리나라의 技術士制度는 國家技術資格法에 依한 廣範圍한 國家技術資格制度의 한 部門으로 運營되고 있으므로 해서,

1) 國家技術資格法에는 技術士의 資格取得에 關한 事項만 規定하고 있을뿐 技術士의 定義, 職務, 業務領域, 管理 및 技術士會設立等の 規定이 없어 効率的인 運營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技術士制度 關係法規가 科學技術 擔當部處인 科學技術處가 아닌 勞動部에 依해 主管되고 있으므로 技術士의 大部分을 管理하고 있는 科學技術處의 關聯政策樹立 및 遂行에 어려움을 招來하고 있습니다.

3) 現行 技術士制度는 技術士의 職務는 技術用役業者에게로 넘어가고(技術用役育成法), 資格取得은 勞動部에서(國家技術資格法), 管理는 建設部等 各 主務部處에서 分散擔當하고 있어 制度의 多元化現狀을 招來, 技術士의 効率的인 活用과 事後管理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3. 外國의 技術士制度

大部分의 先進國과 開發途上國들은 技術士制度를 專門獨立法에 依據하여 効率的으로 管理·運營하고 있습니다.

1) 美 國

各 州마다 Professional Engineers Act 가 있음(P.E)

2) 英 國

Royal Charter 에 依하여 資格附與

3) 日 本

技術士法에 依하여 資格附與(1957年 制定)

4) 캐나다

各 州마다 Professional Engineers Act 가 있음

5) 프랑스

技術이 認定된 大學卒業者에게 Ingénieurs-Diplômé 라는 國家資格 附與

6) 뉴우질랜드

Engineers Registration Act(1924年)

7) 남아프리카

Professional Engineers Act(1968年)

※ 參考資料 參照

## 4. 結論 및 建議

다가올 未來는 技術主導社會, 後期產業社會 또는 情報化 社會等으로 展望되고 있으며, 이러한 展望의 共通的인 基底는 科學技術이 社會發展의 牽引車役割을 擔當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같이 豫見되는 時代의 흐름에 能動的으로 對處하여 先進社會를 實現하기 爲해서 政府에서는 “2000年代를 向한 科學技術發展長期計劃”을 樹立하고 科學技術立國을 爲한 世界 10位圈 技術先進國進入目標을 設定하였습니다. 이러한 目標達成을 爲하여는 무엇보다도 技術革新을 이룩할 수 있도록 科學技術關聯制度를 確立하여 優秀科學技術人力을 養成·確保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1) 主要 先進國과 같이 技術士制度를 獨立的으로 運營할 수 있는 技術士專門法을 制定하여 科學技術處가 主管함으로써 能動的이고 効率的인 政策을 樹立遂行할 수 있고 技術士制度를 活性化시켜 技術士의 產業技術發展에 寄與度を 提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이와같은 目的達成을 爲하여 새로이 制定되는 技術士專門法(國家技術士法)은 技術士의 定義, 資格取得, 職務, 管理 및 技術士會等の 事項을 總網羅한 完全한 法이 되어야 합니다.